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종업원분 주민세에 대한 과세대상 명확화 필요

소 관 기 관 행정안전부

조 치 기 관 행정안전부

내 용

1. 업무 개요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세 징수제도 및 업무개선 등을 총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을 관리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74조 제3호 및 제75조 제3항에 따르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이하 “종업원분 주민세”라 한다)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6조 제3항에 따르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표 1]과 같이 관내 사업주에게 종업원분 주민세로 매년 평균 3,362억여 원을 과세하고 있다.

[표 1] 서울특별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현황

(단위: 백만 원, 명)

구분	5년 평균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액	336,219	302,534	313,466	323,171	342,729	399,194
종업원 수(연인원)	22,233,226	20,430,927	19,702,565	23,912,128	27,075,185	20,045,325

자료: 서울특별시

2. 관계 법령(판단기준)

「지방세법」 제74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 따르면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등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에 따르면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되어 있으며, 「2016년 지방세법 기본통칙」 “제74-1”에 따르면 사업소의 물적 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착되어 현실적으로 사무·사업⁵⁰⁾에 이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8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27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50)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68”(2014. 3. 5.) 문서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무’란 해당 사업의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음

한편, 우리나라 기업의 파견·용역근로자는 [표 2]와 같이 2017년 현재 전체 고용의 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단위: 천 명, %)

구분	계 (A=B+C)	소속 근로자			파견·용역근로자 (C)
		소계(B=a+b)	정규직(a)	기간제(b)	
2015년 (비율)	4,594	3,676 (80.0)	2,834	842	918 (20.0)
2016년 (비율)	4,736	3,805 (80.3)	2,905	900	931 (19.7)
2017년 (비율)	4,755	3,853 (81.0)	2,925	928	902 (19.0)

자료: 고용노동부 자료 재구성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파견·용역업체의 사업소를 해당 업체의 본사로 볼지 아니면 개별 파견근무지로 볼지에 따라 종업원분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종업원 급여총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성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파견·용역업체의 사업소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지방세법」의 ‘사업소’ 관련 규정이 파견·용역업체 등 고용형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파견·용역업체의 사업소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파견·용역업체의 사업소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을 한 후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징수업무를 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2018년 4월 현재 파견·용역업체⁵¹⁾의 사업소를 해당 업체의 본사로 보는지 아니면 개별 파견근무지로 보는지에

51) 파견·용역업체의 업종은 주로 경비, 청소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종별로 근무형태와 운영방식 등이 대동소이하였음

대해 표본을 분석한 결과, [표 3]과 같이 각 자치구에서는 파견·용역업체의 사업소에 대한 판단기준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같은 자치구에서도 건별로 판단 기준을 달리하여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

[표 3] 파견·용역업체에 대한 사업소 판단 현황(2018년 4월 기준)

(단위: 개, 명)

구분	계		업체 본사를 사업소로 판단		근무지를 개별 사업소로 판단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업체 수	종업원 수
계	300	116,470	68	33,868	232	82,602
종로구	46	26,004	24	24,415	22	1,589
강남구	79	25,609	13	1,088	66	24,521
서초구	22	7,784	4	529	18	7,255
송파구	52	20,399	9	1,474	43	18,925
영등포구	101	36,674	18	6,362	83	30,312

자료: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경우 관내 경비원 파견업체인 ◇◇에 대하여 본사 및 파견직원 계 266명의 급여총액 13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월평균 597만 원 부과하면서, 같은 경비원 파견업체인 ◆◆에 대하여는 본사 및 파견직원 계 1,550명(급여총액 34억 원) 중 파견직원 1,520명을 제외한 본사 직원 30명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서 「지방세법」 제8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2 제2항에 따라 최근 1년간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면세점 이하라는 사유로 종업원분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⁵²⁾

그 결과, 같은 형태의 파견·용역업체 사업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심지어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서도 각기 달리 판단함으로써 업체별로 과세 여부가 달라

52) 본사 및 파견직원 계 1,550명을 과세표준으로 했더라면 종업원분 주민세는 월평균 1,510만 원을 부과했어야 함

지는 등 조세형평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기간(2018. 4. 23.~5. 18.) 중 2000년 이후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주요 유권해석, 심판사례 등 법리해석 사례를 검토한 결과, [표 4]와 같이 행정안전부와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이나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에서도 용역·파견업체의 사업소를 사례별로 달리 보고 있었다.

[표 4] 종업원분 주민세 관련 유권해석 및 조세심판 사례

구분	파견·용역업체 본사를 사업소로 판단하여 과세	파견·용역직원의 근무장소를 별도의 사업소로 판단하여 과세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지방세운영과-3187(2015. 10. 13.)	지방세분석과-2226(2009. 6. 9.), 세제과-7100(2009. 5. 28.), 행정안전부-98(2007. 12. 11.), 세제정책과 13407-220(2003. 3. 24.)
서울특별시 (유권해석)	서울 세제과-2322(2016. 2. 17.)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조심2016지0849(2016. 11. 24.)	조심2016지0659(2016. 9. 9.)

자료: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의견 행정안전부는 감사결과의 사실관계나 법령 적용 등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파견·용역업체의 사업소와 관련하여 사업성격과 근무형태 등을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운영요령」을 마련하여 조세형평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종업원분 주민세 부과·징수업무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성격과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파견·용역업체의 사업소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통보)